

제 호

피해어업인단체 신고증명서

피해어업인단체 명칭

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
신고 연월일

대표자

성명

주민등록번호

주소

「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제1항
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어업인단체로 신고하였음을 증명
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
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